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2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김민전 · 권성동 · 윤한홍  
고동진 · 최수진 · 서천호  
조정태 · 조배숙 · 나경원  
곽규택 · 장동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존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 및 증거보전 신청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

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선거물품등의 관리 및 폐기)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이하 “선거물품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 제222조에 따른 선거소송 및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하 “선거쟁송”이라 한다)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선거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선거물품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무단 유출되거나 훼손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물품등의 관리 대상, 회수 절차 및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86조의2(선거물품등의    관리 및 폐기) ①</u> <u>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투표용지 보관 용품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이하 “선거물품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u></p> <p><u>②</u> <u>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 제222조에 따른 선거소송 및 제223조에 따른 당선소송(이하 “선거쟁송”이라 한다)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등을 폐기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선거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③</u> <u>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선거물품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무단 유출되거나</u></p>

나 훼손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거물품등의 관리 대상, 회수 절차 및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